
II. 가용자본 산출 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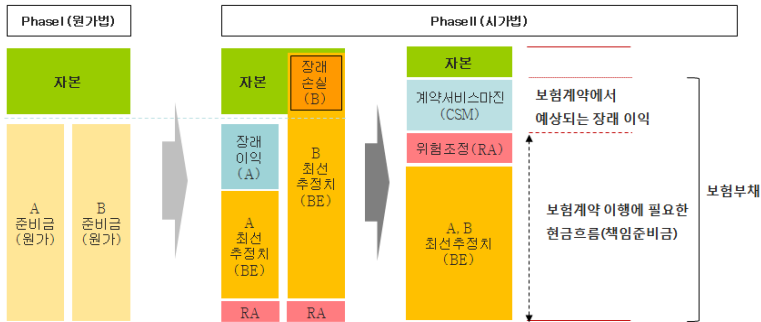
1. IFRS 4 Phase II 자본 활용

현재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는 가용자본을 재무회계인 IFRS 4 Phase I 상 자본을 일부 조정하여 구한다. 이와 유사하게 재무회계인 IFRS 4 Phase II 자본을 일부 조정하여 시가기준 지급여력평가의 가용자본으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가용자본은 IFRS 4 Phase II 에 기초하여 계산된 재무회계상 자본에 합산 항목과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산출될 것이다.

이때 IFRS 4 Phase II 는 장래이익에 해당하는 계약서비스마진을 보험부채로 평가한다. 다시 말해 IFRS 4 Phase II 의 자본은 계약서비스마진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회계상 자본을 그대로 지급여력평가에 반영할 경우, 계약서비스마진은 지급여력평가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보험부채 평가방식은 상당한 규모의 손실계약(시가방식 보험부채가 원가방식 보험부채보다 큰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생명보험회사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IFRS 4 Phase II 도입 시 손실계약은 보험부채를 증가시켜 자본 감소를 초래하는 반면, 이익계약(시가방식 보험부채가 원가방식 보험부채보다 작은 계약)에서 예상되는 장래이익(원가방식 보험부채와 시가방식 보험부채의 차)은 계약서비스마진으로 인식되어 여전히 보험부채로서 자본 증가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그림 II-1 참조).

〈그림 II-1〉 IFRS 4 Phase II 자본



2. EU Solvency II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2016년 1월 1일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새로운 지급 여력제도인 Solvency II를 시행한다. Solvency II는 재무회계원칙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와는 별도의 Solvency II 재무제표⁵⁾를 바탕으로 지급여력을 평가한다. Solvency II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⁶⁾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olvency II에서의 보험부채는 상품판매시점에 사용한 최초 가정이 아닌 평가 시점에서의 계리적 가정(사업비용, 해약률 등)과 시장 가정(할인율)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는 IFRS 4 Phase II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EU Solvency II는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IFRS 4 Phase II 자본을 가용자본으로 활용하는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Solvency II 상에서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technical provision)은 최선추정치(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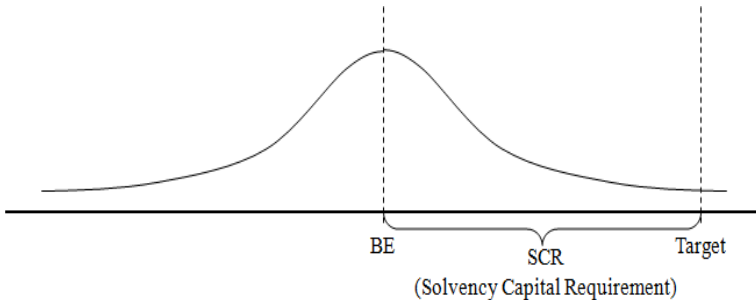
5) 자산, 부채,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 간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로 일관성 있게 평가하고, 리스크를 적절히 인식하고 측정하는 방식인 총재무제표방식(total balance sheet)을 기초로 함.

6) 자산은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당사자들 간의 공정거래에서 참여자들이 교환(exchange)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부채는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당사자들 간의 공정거래에서 이전(transfer)되거나 정산(settle)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함(단, 보험사의 자기신용 상태를 고려하는 후속 조정이 없어야 함)(Solvency II Directive (2009/138/EC) and Omnibus II).

estimates)와 위험마진(risk margin)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부채에 장래이익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장래이익은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지급여력평가의 목적은 재무건전성 확보인데, 이는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순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급여력평가란 예상 외 손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급여력평가에서 보험회사가 감당해야 할 예상 외 손실은 요구자본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예상 외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버퍼(risk buffer)는 가용자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상 외 손실은 예상손실인 최선추정치를 초과하는 손실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를 흡수할 가용자본도 최선추정치를 초과하는 순자산이 되어야 한다(〈그림 II-2〉 참조).

〈그림 II-2〉 요구자본과 가용자본



한편 IFRS의 위험조정(RA)과 Solvency II의 위험마진(RM)은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닌다. 위험조정은 보험리스크만을 고려하지만 위험마진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고려한다. 이는 IFRS가 보험계약의 공정가치 평가(시장가치의 대용치)를 목적으로 자산과 무관한 보험계약만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반면 Solvency II는 건전성(계약이전을 고려한 보험계약 의무 이행 가능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표 II-1〉 참조).

〈표 II-1〉 위험조정과 위험마진

	IFRS: 위험조정(RA)	Solvency II: 위험마진(RM)
목적	• 보험계약 공정가치평가	• 건전성 평가
대상	• 보험리스크	•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
관점	• 보험계약 이행가치	• 보험계약 이전 또는 정산가치

마지막으로 Solvency II는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 중에서도 기본자본(tier 1)으로 인정한다. 장래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일시납 계약과 같이 이미 보험료가 들어온 부분에서 기대되는 이익(기납입보험료 장래이익)이고, 둘째는 분할납 계약과 같이 아직 보험료가 수취되지 않아 미래보험료로부터 기대되는 이익(미래보험료 장래이익)이다. 예를 들어, 일시납이 아닌 신계약의 판매시점에서는 장래이익이 모두 미래보험료 장래이익으로만 구성될 것이고, 보유계약의 경우 기납입보험료 장래이익과 미래보험료 장래이익이 혼합되어 있을 것이다. 그동안 Solvency II에서 기납입보험료 장래이익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견이 없었으나, 미래보험료 장래이익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왔다(EIOPA 2011). 하지만 2016년 시행안에서는 미래보험료 장래이익(EPIFP; Expected Profits Included in Future Premiums)도 기본자본(tier 1)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그림 II-3〉 참조).

물론 보험회사가 짧은 기간 안에 대량의 해지사태가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에 처할 경우, 계약 유지를 전제로 상정된 미래보험료 장래이익은 예상 외 손실을 보전하는 가용자본으로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Solvency II에서는 유동성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Pillar 2(정성평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림 II-3〉 EU Solvency II



요약하면 IFRS 4 Phase II와 EU Solvency II 모두 보험부채의 기본 구성은 최선추정치와 위험에 대한 조정(IFRS 4 Phase II는 위험조정, EU Solvency II는 위험마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IFRS 4 Phase II는 장래이익에 해당하는 계약서비스마진을 보험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EU Solvency II는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캐나다 MCCR

캐나다 연방금융감독원(OSFI;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MCCR(Minimum Continuing Capital and Surplus Requirement)⁷⁾이라는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MCCR은 별도의 감독 재무제

7)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MCT(Minimum Capital Test)라는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계/framework 측면에서 보면 MCCR과 MCT는 크게 다르지 않음.

표를 작성하여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EU Solvency II와는 달리 재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지급여력을 평가한다. 이때 재무회계상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으로 캐나다 계리사회(CIA;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의 계리기준위원회(Actuarial Standards Board)가 채택한 계리기준서(Standards of Practice)를 이용한다.

캐나다 MCCR의 경우, EU Solvency II와 마찬가지로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이 가용 자본으로 인정된다. 캐나다 재무회계상 보험부채는 최선추정치(best estimates)와 Solvency II의 위험마진과 비슷한 개념인 MfADs(Margin for Adverse Deviations)로 구성된다. 따라서 재무회계상 보험부채에 장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장래이익은 재무회계 자본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감독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Solvency II와는 달리 MCCR은 장래이익에 해당하는 부(-)의 준비금(NR; Negative Reserve)과 해지환급금 부족액(CSVD; Cash Surrender Value Deficiencies)을 보완자본(tier 2)으로 분류하고, 보완자본은 기본자본(tier 1)의 100% 한도 이내에서 인정한다.

부의 준비금은 장래 현금유입 현가가 장래 현금유출 현가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데, 포트폴리오 단위로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보험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MCCR은 부의 준비금을 계약 단위로 산출하여 기본자본에서 제외하고, 보완자본으로 전부 인정한다. 부의 준비금이 장래이익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의 준비금은 장래 현금유입 현가가 장래 현금유출 현가보다 큰 경우 장래 현금유입 현가에서 장래 현금유출 현가를 뺀 금액이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의 예상 수입인 장래 현금유입 현가에서 보험회사의 예상 지출인 장래 현금유출 현가를 뺀 금액이다. 따라서 부의 준비금은 장래이익이라 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 부족액은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해지환급금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⁸⁾을 의미한다. MCCR은 해지환급금 부족액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산출하여 기본자본에서 제외하고, 보완자본으로 부분(75%)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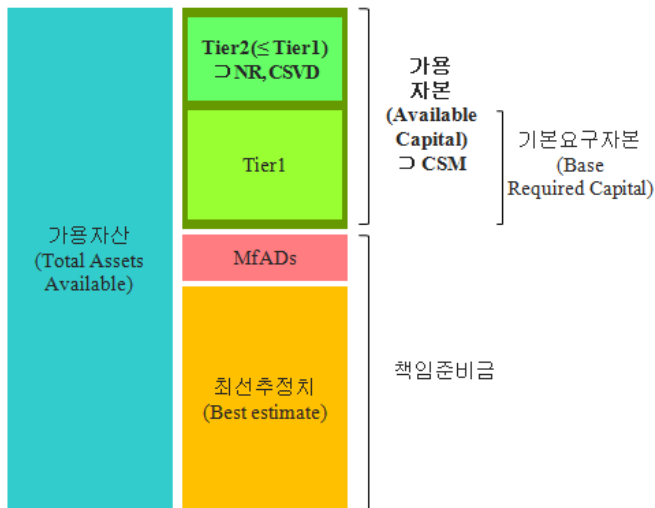
해지환급금 부족액이 장래이익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지환급금 부족액은 해지

8) 수식으로 표현하면, $\text{Max}(\text{해지환급금} - \text{보험부채}, 0)$ 임.

환급금이 시가평가 보험부채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시가평가한 보험부채를 뺀 금액이다. 여기서 해지환급금은 지금 당장 해지한다면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하고, 시가평가 보험부채는 현재 보험회사의 가정대로 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해지환급금이 100이고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80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해지하면 100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험회사는 현재 이 계약에 대해 80정도만 준비하면 계약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즉 지금 당장 해지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가정대로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20의 이익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해지환급금 부족액은 장래이익이라 할 수 있다.

부의 준비금과 달리 보완자본으로 일부만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지환급금 부족액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산출함에 따라 계약 단위로 산출했을 때와 비교하면 상계 효과로 인해 과소평가된다. 따라서 해지환급금 부족액은 계약 단위로 산출했을 경우에 비해 기본자본에서 적게 차감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정으로 보완자본에서는 일부만 인정한다(〈그림 II-4〉 참조).

〈그림 II-4〉 캐나다 MCCR



요약하면 IFRS 4 Phase II와 캐나다 MCCR 모두 보험부채의 기본 구성은 최선추정치와 위험에 대한 조정(IFRS 4 Phase II는 위험조정, 캐나다 MCCR은 MfADs)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IFRS 4 Phase II는 장래이익에 해당하는 계약서비스마진을 보험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 MCCR는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EU Solvency II와 캐나다 MCCR 모두 보험부채는 최선추정치와 위험에 대한 조정(EU Solvency II는 위험마진, 캐나다 MCCR은 MfADs)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EU Solvency II는 장래이익을 모두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으로 분류하는 반면 캐나다 MCCR는 장래이익 중 부의 준비금과 해지환급금 부족액을 기본자본이 아닌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그 인정범위를 기본자본의 100%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